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목차

제1장

연구기관 평가 개요

- 1. 평가 목적 3
- 2. 평가 근거 3
- 3. 평가 추진체계 4
- 4.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6

제2장

2023년도 평가 추진계획

- 1. 평가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내용 9
- 2. 평가절차 12
- 3. 연구분야 13
- 4. 경영분야 17
- 5. 가점 18
- 6.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19
- 7.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활용 24
- 8. 평가 추진일정 30

제3장

연구기관 평가지표

1. 연구 분야(배점 800점)	33
2. 경영 분야(배점 200점)	34
※ 가점(5점)	35

제4장

세부 평가기준

1. 연구분야	39
2. 경영분야	45

- ▣ 별첨 : 1. 「경영목표 실천계획」 양식(안)
2. 「실적보고서」 양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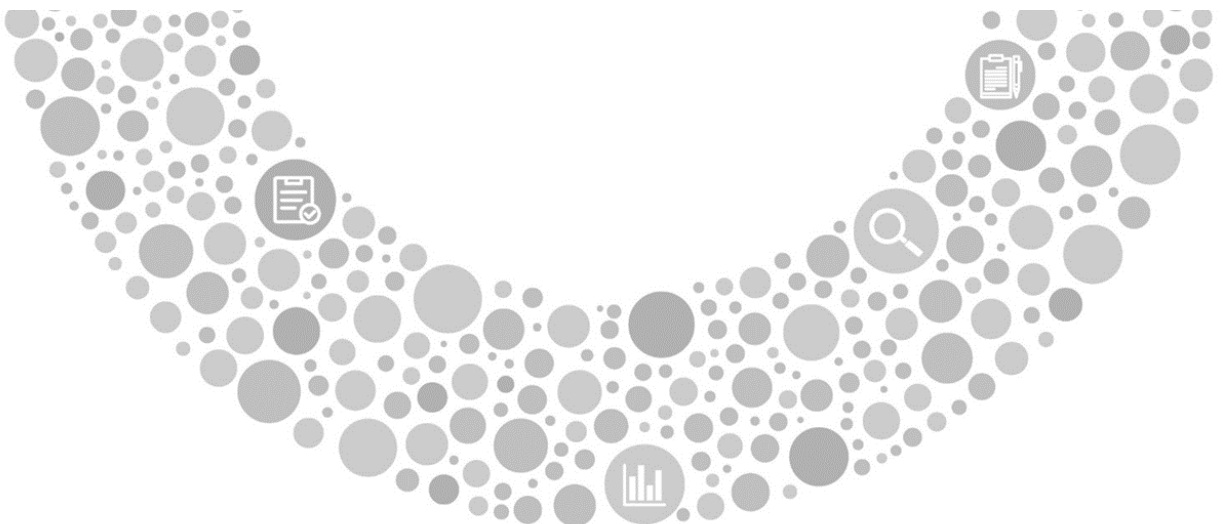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제1장

연구기관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2. 평가 근거
3. 평가 추진체계
4.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1 평가 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무수행의 결과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

<연구기관 평가 목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결과 도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및 연구회의 연구기관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평가 근거

-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9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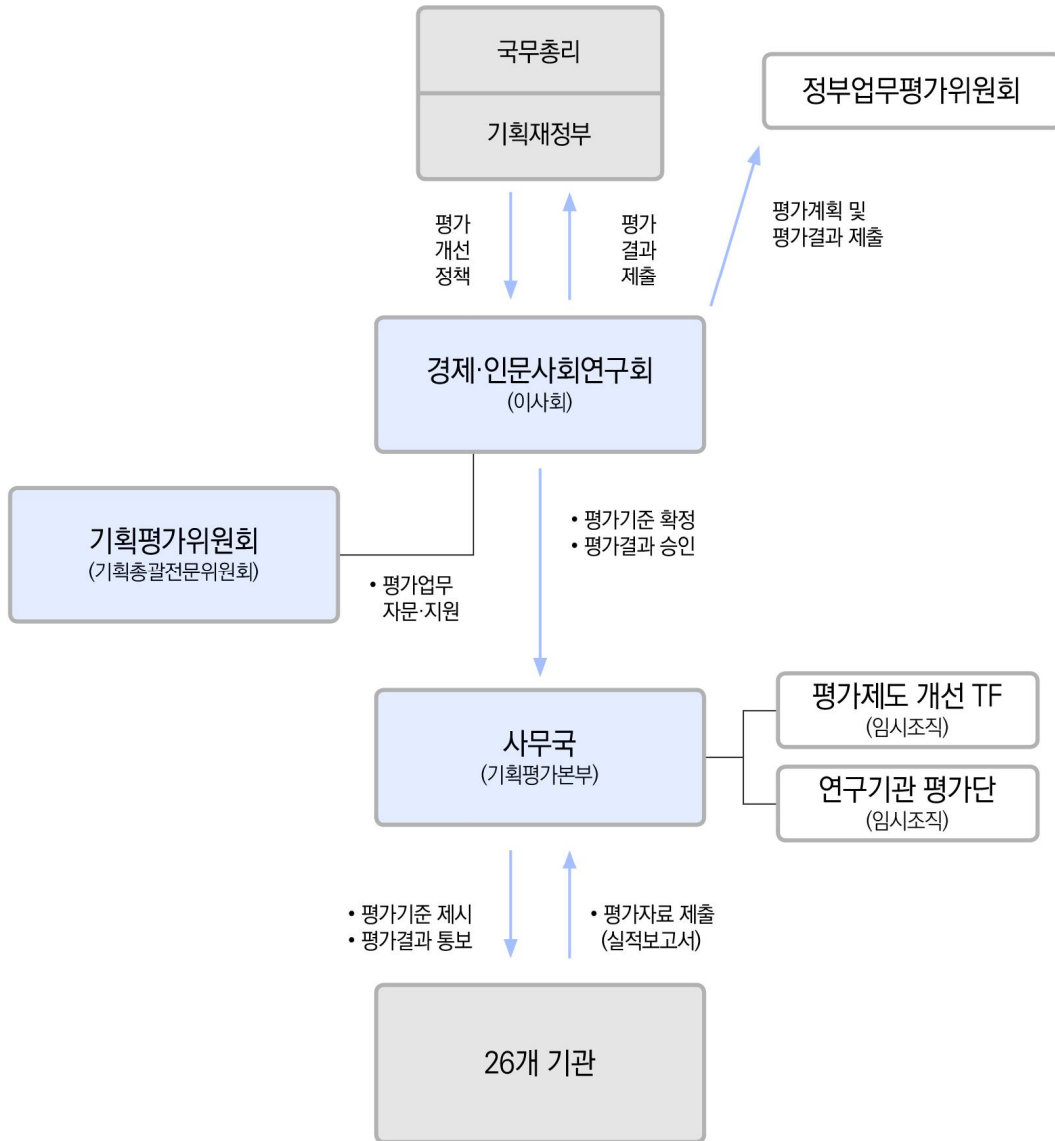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평가 추진체계

- 국무총리(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
 - 평가정책 시달,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
- 기획재정부
 - 평가정책 시달,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차년도 예산 심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연구회는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
 -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승인.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평가위원회(연구기관 평가 담당 분과)
 - 연구회의 평가업무에 관한 계획,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등의 자문·지원
- 평가기준 개선팀
 - 전년도 평가의 문제점, 국가시책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기준 개발
- 연구기관 평가단
 -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평가 실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 〉



4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 평가대상 기관

- 24개 소관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 | | |
|------------------------|-------------------|
|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 국토연구원 | 14. 한국법제연구원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4. 산업연구원 | 15-1. (부설)육아정책연구소 |
| 5. 에너지경제연구원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7. 통일연구원 |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8. 한국개발연구원 |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8-1. (부설)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9. 한국교육개발원 | 21. 한국행정연구원 |
|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11. 한국교통연구원 | 23. 한국환경연구원 |
| 12. 한국노동연구원 | 24. 건축공간연구원 |

※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평가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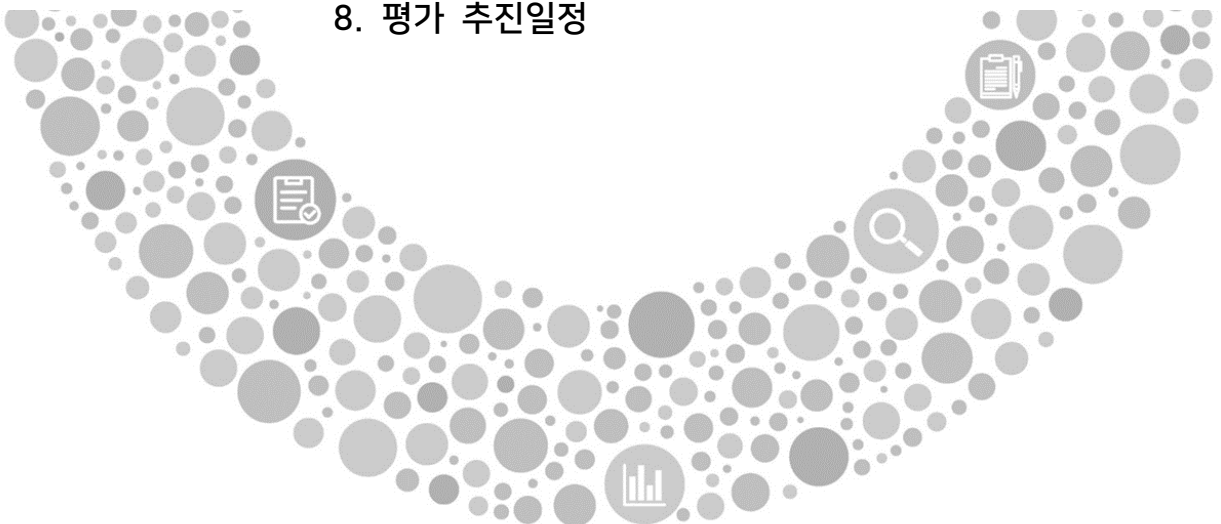
- 2024. 1. ~ 4.



제2장

2023년도 평가 추진계획

1. 평가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내용
2. 평가절차
3. 연구분야
4. 경영분야
5. 가점
6.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7.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활용
8. 평가 추진일정



1 평가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싱크탱크로서의 연구역량 집중과 중장기적 연구 성과관리 체계로 제도 개편
 - 국무조정실-연구기관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평가제도의 과감한 개선 및 간소화를 통한 연구몰입환경 제공
- * 연구기관 평가에 따른 기관의 부담 완화, 연구 자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계한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계로 간소화 필요

2) 평가제도 개선 방향

- 경영목표에 기반한 증점추진사업 위주 맞춤형 지표 개선 및 성과중심 평가
- 평가목적을 달성한 지표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경영지표 간소화

※ 국무조정실 「출연연구기관 자율성 제고방안」(‘23. 2.) 및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개편 방향」(‘23. 4.)에 따른 연구기관 평가 제도개선 추진

3) 주요 개선사항

- (평가 추진체계) 사전에 연구기관에서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통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평가 추진 체계	- 연구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 ※ 「경영목표 실천계획», '리더십' 평가 활용	- 평가대상연도(N년)을 기준으로, ① 사전에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출하고(~N년 3월), ②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N+1년 1월), ③ 이에 대한 평가 실시(N+1년 1월~4월)

- (분야별 개선사항) ① (연구분야) 공통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중점추진사업'과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경영분야) 지표 통합·조정, 일부 연구분야 평가지표 반영, 의무사항 등 정량지표 확대 등을 통하여 평가지표 개선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연구 분야	○ 연구과정관리(연구기획-연구수행-성과확산 및 환류) 등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적용하여 운영현황 및 성과 등을 평가	○ 연구기관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매년 작성하는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추진전략' 단위로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중점추진사업'을 구성하는 '실천과제'별 '목표의 타당성', '목표 타당성', '달성도'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경영 분야	○ 5개 평가지표 (53개 세부평가요소(정성 37개, 정량 16개))	○ 5개 평가항목 (34개 평가요소(정성 15개, 정량 19개)) - 지표 간 중복되거나 과도한 평가지표 통합·조정 - 일부 연구분야 평가지표 반영 - 의무사항 등 정량지표 확대 등
가점	○ 1개 평가요소 5점	○ 2개 평가요소 5점

- (평가지표 및 배점) ① (연구분야) 평가지표·요소의 배점을 공통 적용하는 방식에서 연구 기관 자율로 각 중점추진사업·실천과제의 중요도, 임무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표별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경영분야) 평가지표의 통폐합·조정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 재구성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평가 지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구분	평가지표 및 항목	배점
	경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사회적 책임 • 감사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 예산운용 및 결산 	200 (정성/ 정량)	경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사회적 책임 • 예산운용 및 결산 	100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 기관운영의 적정성 	100 (정량)

- (평가제도 및 운영) ① 평가척도의 등급 명칭을 평가등급 부여 시 사용하는 등급 명칭과 구분 하여 국문(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변경, ② 평가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단 구성 변경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평가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척도의 등급 명칭 영문(S/A/B/C/D)으로 구성 ※ 평가척도의 등급 명칭과 평가등급 부여 시 사용하는 등급 명칭이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척도의 등급 명칭 국문(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변경 ※ 평가등급 부여 시 등급 명칭과 상이하도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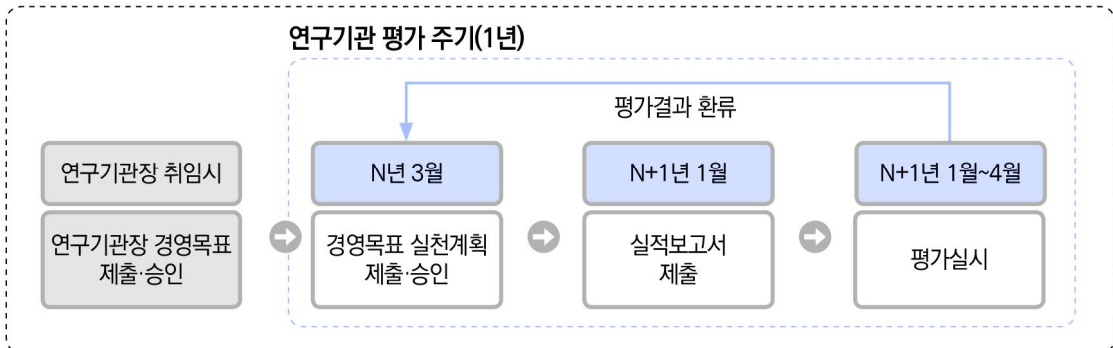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평가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8명) 평가단장 1명,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장 1명, 연구분야 평가단 35명, 경영분야 평가단 11명으로 구성 ※ 연구보고서 평가단, 정책기여도 평가단 별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1명) 평가단장 1명, 연구분야 평가단 34명(분과위원장 5명, 평가위원 29명), 경영분야 평가단 6명(분과위원장 1명, 평가위원 5명)으로 구성 ※ '사업효과 및 정책기여도' 지표 : 기관별 공무원 평가위원 참여(중점추진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 평가전문성 제고 및 평가위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점추진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활용 가능

2 평가절차

- (개요) 평가대상연도(N년)을 기준으로, ① 사전에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출하고(~N년 3월), ②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N+1년 1월), ③ 이에 대한 평가실시(N+1년 1월~4월)

〈평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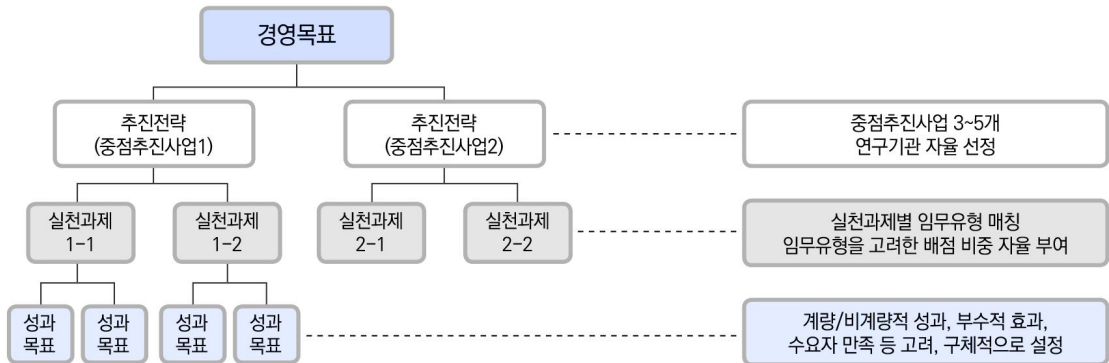
연구기관장 임기(3년)



※ 2023년도 평가, 「경영목표 실천계획」 2023년 8월까지 제출·접수(승인)

3 연구분야

- 「경영목표 실천계획」 ‘추진전략’ 단위로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중점추진사업’을 구성하는 ‘실천과제’ 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계별 주요내용

- ①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경영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성과목표·지표 설정하고, ‘추진전략’ 중 중점추진사업을 3~5개 선정하여 배점을 부여,
- ② 「실적보고서」 작성 시, 중점추진사업별 1~3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과제 및 평가 지표 배점 부여, ③ 「실적보고서」 기준으로 평가 실시

단계	(N년, ~3월)* 경영목표 실천계획 제출·승인	(N+1년, 1월) 실적보고서 제출	(N+1년, 1월~4월) 평가 실시
단계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실천과제(1~3개) 임무유형 매칭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 ‘추진전략’ 중, 중점추진사업 3~5개 자율 선정 ○ 중점추진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기관 자율배점 부여 (150~300점, 50점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추진사업별 1~3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과제 및 평가지표 배점을 부여 ○ 중점추진사업 및 실천과제 실적을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추진사업별 해당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결과 산출

* 2023년도 평가, 「경영목표 실천계획」 2023년 8월까지 제출·접수(승인)

○ 「경영목표 실천계획」 작성·제출

- (개요) 연구기관 기관장 경영목표에 근거하여 매년 제출하는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연구기관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 (양식 : 별첨 1)
- (구성 및 정의) 경영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성과목표로 구성

구 분	내 용
경영목표	연구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관 원장이 수립하여 연구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영목표
추진전략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전략
실천과제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하위의 연도별 세부계획
성과목표*	실천과제 수행의 구체적인 목표 및 지향점

* 계량·비계량적 성과, 부수적 효과, 수요자 만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

- (작성범위) 연구기관의 기관장 경영목표에 근거하여, 분야(연구, 연구지원, 경영 등)에 관계없이 전체 경영목표에 대하여 작성
- (임무유형) ‘실천과제’ 단위로 임무유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설정 (※ 연구(지원) 분야 ‘실천과제’에 한하여 임무유형 설정)

임무유형	정 의
기초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창출 및 정보·자료수집, 조사·분석, 방법론 및 이론·모델개발, 시스템 구축, 연구사업 개발 등
정책개발	국가전략 및 계획, 국가정책방안 및 수단 개발, 정책설계 및 분석, 법·제도 설계 및 평가, 정책 집행사업 수행 및 평가 등 정책과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
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미래장기대응·혁신	미래방향성을 예측·제시하고 기술·시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정책교육	인력양성, 교육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 육성에 관련된 연구나 정부위탁 사업 등 시책지원 활동

※ 출처: 조범철 외(2019), 『연구기관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중점추진사업) 「경영목표 실천계획」 제출 시 평가대상 중점추진사업 및 배점 설정

구 분	내 용
선정	「경영목표 실천계획」 내 연구(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추진전략 중에서,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3~5개의 중점추진사업 선정 ※ (경과조치) '23년 상반기까지(평가제도 개선(안) 확정 전) 경영목표가 승인된 기관은 연구 분야 및 연구지원 분야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중 3~5개의 '중점추진사업' 선정 ('실천과제'를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실천과제'를 '중점추진사업'이면서 유일한 '실천과제'로 구성)
배점	총점 800점 기준, 중요도를 고려하여 연구기관 자율 배점 부여 단, 각 중점추진사업은 150~300점 범위에서 50점 단위로 배점 부여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개요) 연구기관 '중점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양식 : 별첨 2)

- (중점추진사업 실천과제) 중점추진사업에 해당하는 실천과제에 대하여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자율배점 설정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연구기관에서 선정한 중점추진사업 해당하는 추진전략에 속하는 실천과제 ※ '중점추진사업' 별 '실천과제' 1~3개를 연구기관 자율로 선정하여 평가																											
실천과제 배점	별도 배점기준 없이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결정 〈평가배점 예시(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중점추진사업-1 (300점)</th> <th colspan="3">중점추진사업-2 (250점)</th> <th colspan="3">중점추진사업-3 (250점)</th> </tr> <tr> <th>실천과제 1-1</th> <th>실천과제 1-2</th> <th>실천과제 1-3</th> <th>실천과제 2-1</th> <th>실천과제 2-2</th> <th>실천과제 2-3</th> <th>실천과제 3-1</th> <th>실천과제 3-2</th> <th>실천과제 3-3</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00</td> <td>100</td> <td>150</td> <td>50</td> <td>50</td> <td>150</td> <td>100</td> <td>0</td> </tr> </tbody> </table>	중점추진사업-1 (300점)			중점추진사업-2 (250점)			중점추진사업-3 (250점)			실천과제 1-1	실천과제 1-2	실천과제 1-3	실천과제 2-1	실천과제 2-2	실천과제 2-3	실천과제 3-1	실천과제 3-2	실천과제 3-3	100	100	100	150	50	50	150	100	0
	중점추진사업-1 (300점)			중점추진사업-2 (250점)			중점추진사업-3 (250점)																					
실천과제 1-1	실천과제 1-2	실천과제 1-3	실천과제 2-1	실천과제 2-2	실천과제 2-3	실천과제 3-1	실천과제 3-2	실천과제 3-3																				
100	100	100	150	50	50	150	100	0																				
실천과제 평가지표 구성	'목표의 타당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 '사업우수성 및 정책 기여도' 4개 지표로 구성																											
실천과제 평가지표 배점	실천과제의 임무유형을 고려, '평가지표 배점기준표'의 배점 비중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 자율배점 부여																											

※ (평가지표 배점기준표) 각 실천과제에 대하여 다음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부여

평가지표	내 용	배점 비중
목표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고려한 추진전략-실천과제-성과목표-성과지표 간 적정성 • 성과목표와 개별사업 간 적합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혁신적 및 도전적 성격 	30%
이행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 충실성 •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 대응성 • 성과지표 이행의 적극성·혁신성 	10% ~20%
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10% ~20%
사업효과 및 정책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효과(국정과제 기여도, 단기·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의사결정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결과의 양적실적 및 질적수준 등) • 정책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정책기여도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실적, 부처 등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등) - 정책 집행사업 정책기여도 (사업집행의 효과성,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해외사무소 평가 등) ※ 연구보고서 평가 : '실천과제' 내 '관련 사업 내역' 중 전체 평가대상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서 내용, 정책 및 학술 기여 성과 등 정성평가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연구기관이 평가대상 연도에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와 일반연구과제 수를 합한 과제수의 80% 이상 포함, 중점추진사업에 과제수의 50% 이상 포함(※ 필요 시, 평가단이 중점추진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평가할 수 있음)) 	40% 이상

4 경영분야

- (지표구성) 경영분야 평가지표의 통합·조정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 재구성 (5개 지표 ⇒ 5개 항목)
 - ‘리더십’ 지표를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통합하고, 연구분야의 ‘연구윤리’를 포함하여 평가항목 구성 등

2022년도		2023년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2-1. 경영 관리 (200점)	2-1-1. 리더십 (50점)	2. 경영 분야 (200점)	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55점)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35점)		2-2. 사회적 책임 (45점)
	2-1-3. 사회적 책임 (45점)		2-3. 예산 운용 및 결산 (30점)
	2-1-4. 감사 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40점)		2-4.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45점)
	2-1-5. 예산 운용 및 결산 (30점)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25점)

※ 기존 연구분야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분야로 이동하고 보안관리와 통합

- (요소 및 배점) 지표 간 중복되거나 과도한 평가지표를 통합·조정하고, 일부 연구분야의 지표를 반영하여 정량 100점 + 정성 100점으로 평가
 - 일부 정성평가 지표 중 의무사항 등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지표는 정량으로 평가방식을 변경(정량지표 확대)

〈평가요소 및 배점 조정〉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지표	53개 (정성 37개, 정량 16개)	34개 (정성 15개, 정량 19개)
배점	200점 (정성 126점 + 정량 74점)	200점 (정성 100점 + 정량 100점)

- (지표 개선사항) 평가내용 및 평가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지표 조정
 - (신설) 연구분야 일부 지표를 경영분야로 이동하여 지표 신설
 -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연구윤리 준수(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 (폐지·축소) 평가내용 간 유사·중복되거나 평가 실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지표 폐지·축소
 - ※ 경영목표 관한 사항(리더십), 복무관리의 적정성 및 고충처리 실적(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비정규직·임금피크제·청년인턴 운영실적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 등
 - (조정) 지표의 내용 및 정부정책 방향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조정
 - ※ 일·가정 양립(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사회적 책임) 등

5 가점

- 공공기관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가점요소 추가

2022	2023
①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5점)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4점) ② 출연(연) 특성 등을 고려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과 성과(1점)

6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1)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장

- 연구기관 평가를 총괄하며, 평가결과(안)를 확정하여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 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평가결과를 연구기관에 설명

○ 연구분야 평가단

- 경제산업통상분과, 국토환경분과, 복지노동여성분과, 미래준비분과, 공공정책분과의 5개 분과로 2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총 34명, 해외사무소 평가위원 3명 포함)
-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 1명과 4~7명의 위원으로 구성, 연구분야에 대하여 평가

구분	경제산업통상분과	국토환경분과	복지노동여성분과	미래준비분과	공공정책분과
평가 위원	총 6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5명)	총 8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7명)	총 6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5명)	총 6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5명)	총 5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4명)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설 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육아정책연구소		
합계	5개 기관	7개 기관	5개 기관	5개 기관	4개 기관

※ 연구기관별 중점검토위원 배정

※ ‘사업효과 및 정책기여도’ 지표 : 기관별 공무원 평가위원 참여(중점추진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 평가전문성 제고 및 평가위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점추진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활용 가능

○ 경영분야 평가단

- 분과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총 6명), 경영분야에 대하여 평가
 - ※ 평가항목별 중점검토위원 배정

○ 평가단 총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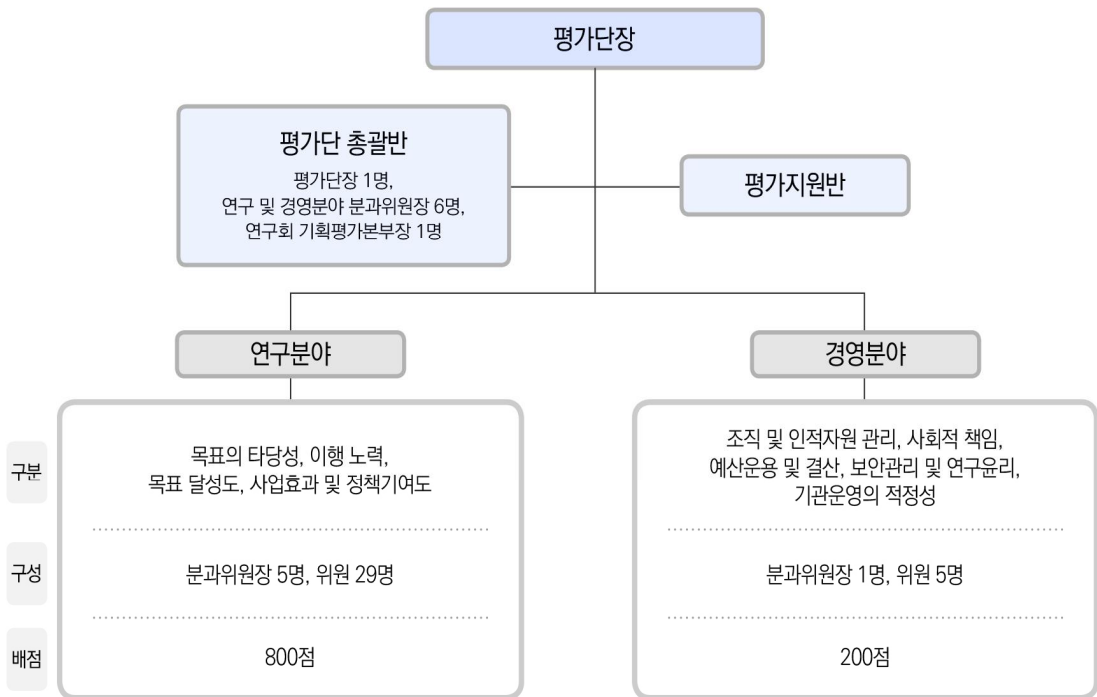
-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

※ 평가단장 1명, 연구분야 분과위원장 5명, 경영분야 분과위원장 1명, 연구회 기획평가본부장 1명

○ 평가지원반

- 기획평가본부장 및 평가부장, 평가부원 등으로 구성, 연구기관 평가를 실무적으로 운영·지원

〈 평가단 구성 〉



※ 연구분야는 해외사무소 평가위원 3명 포함

※ '2-2-2. 우선구매 실적', '2-3-1. 예산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 '2-4-1. 보안관리 적정성', '2-5-2. 경영 투명성'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연구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평가 및 실사평가를 진행

〈평가척도 및 기준〉

- 평가요소별로 아래 표의 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한 후 평가요소에 부여된 배점에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평가요소의 점수로 산정함.

등급	가중치	등급 부여기준
탁월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매우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탁월하게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가장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매우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상당 수준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상당히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양호	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통 수준보다는 다소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보통 수준 이상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어진 여건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	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 일상적인 노력 외에 특별한 노력은 없었고 그 결과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보통 수준 기여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사용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주어진 여건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흡	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 다소 미흡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가정책에 기여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하고 다소 부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여건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 다음 외부 평가지표(요소)는 별도의 평가(점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등급으로 평가(점검)결과를 받는 경우, 평가척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 환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1-3. 내·외부 소통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환산·적용
2-3. 예산운용 및 결산	2-3-1. 예산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연구회의 '2023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환산·적용
2-4.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2-4-1. 보안관리 적정성	○ 일반보안, 정보보안 관리수준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보보안 실태평가' 결과를 환산·적용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환산·적용
	2-4-2. 연구윤리 준수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 연구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환산·적용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2-5-2. 경영 투명성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경영정보공시(알리오) 점검결과'를 환산·적용
		○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 연구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환산·적용
		○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 주무부처의 점검 결과를 환산·적용
가점	혁신계획 등 이행 노력	○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주무부처의 점검 결과를 환산·적용

※ 외부 평가지표(요소)를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평가편람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총괄반 회의를 통해 결정

○ 다음 평가지표(요소)는 별도의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1-3. 내·외부 소통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점수'를 다음 5등급으로 환산·적용																
		<table border="1"> <tr> <td>90점 이상</td> <td>85점 이상 ~ 90점 미만</td> <td>80점 이상 ~ 85점 미만</td> <td>75점 이상 ~ 80점 미만</td> <td>75점 미만</td> </t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able>	90점 이상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미만	S	A	B	C	D						
90점 이상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미만														
S	A	B	C	D														
2-2. 사회적 책임	2-2-1. 균등한 기회 제공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 평가기준 준수, 미준수의 2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평가기준 준수</th> <th>평가기준 미준수</th>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0</td> </tr> </table>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2-3. 예산운용 및 결산	2-3-1. 예산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평가기준 준수, 미준수의 2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평가기준 준수</th> <th>평가기준 미준수</th>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0</td> </tr> </table>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가중치	1.0	0.0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2-5-2. 경영 투명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평가기준 준수, 일부준수, 미준수의 6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평가기준 준수</th> <th colspan="4">평가기준 일부준수</th> <th rowspan="2">평가기준 미준수</th> </tr> <tr> <th>4개준수</th> <th>3개준수</th> <th>2개준수</th> <th>1개준수</th>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6</td> <td>0.4</td> <td>0.2</td> <td>0.0</td> </tr> </table>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일부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4개준수	3개준수	2개준수	1개준수	가중치	1.0	0.8	0.6	0.4
구분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일부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4개준수	3개준수	2개준수	1개준수													
가중치	1.0	0.8	0.6	0.4	0.2	0.0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2-5-2. 경영 투명성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 '2023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별점 기준에 따라 다음 5등급으로 환산·적용																
		<table border="1"> <tr> <td>0점</td> <td>0점 초과 ~ 5점 이하</td> <td>5점 초과 ~ 10점 이하</td> <td>10점 초과 ~ 20점 이하</td> <td>20점 초과</td> </t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able>	0점	0점 초과 ~ 5점 이하	5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 20점 이하	20점 초과	S	A	B	C	D						
0점	0점 초과 ~ 5점 이하	5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 20점 이하	20점 초과														
S	A	B	C	D														

7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활용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평가는 ① 평가개시 12개월 전에 연구기관 평가지침과 기준 제시, ② 연구기관 경영목표 실천계획 작성·제출, ③ 제시된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④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평가단에 의한 사전평가 및 실사평가 실시, ⑤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정, ⑥ 피평가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쳐 연구기관 평가단의 평가결과(안) 확정 및 이사회 승인, ⑦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 및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함.

1) 평가지침과 기준 제시(평가편람 확정·통보)

- 연구회는 평가 연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여(이사회 의결) 연구기관에 제시(사전에 충분한 평가 준비기간 부여)
 - ※ 단,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환경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평가편람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규정」 제3조제2항).
- 평가편람에는 평가 연도의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점부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연구기관 「경영목표 실천계획」 작성·제출

- 연구기관은 기관장 경영목표를 근거로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구기관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함.
 - ※ (2023년도 평가) 「경영목표 실천계획」 2023년 8월까지 제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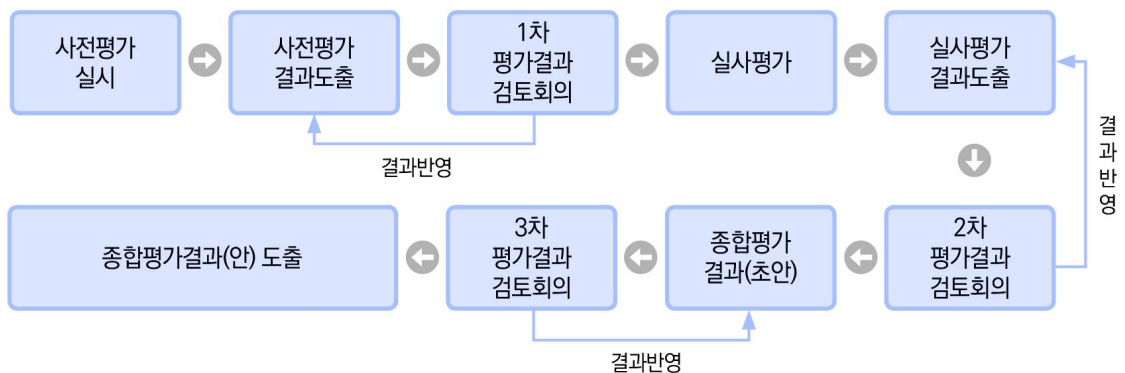
3)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편람과 해당 연도 평가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소관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작성을 계획하고 준비함.

- 「실적보고서」에는 반드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의 실적과 평가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편람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에는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기능), 연구기관의 연혁, 조직 및 인원, 예산, 시설 현황, 연구·사업실적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기관장에게 「실적보고서」를 보고하여 확정하고, 해당 평가항목(평가지표)의 평가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함.

4) 평가 실시

- 이사회에서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단'은 소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 및 경영내용을 사전평가한 후, 실사평가 과정을 거쳐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지표(평가요소)별 평점을 부여함.
 - 실사평가 일정은 평가단, 연구회 평가지원반(평가부),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평가지표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의견서, 평가표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 사전평가를 통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 입력
 - 사전평가와 실사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하며, 평가는 평가단의 합의를 통한 공동작업이 되도록 함.



※ 평가 과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정

○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의견서, 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단은 연구기관 평가결과(초안)를 작성
 - ※ 평가등급에 부합하는 평가의견 작성

〈 평가결과(초안) 도출 과정 〉



○ 평가결과(초안 및 수정안)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제시 실시 (1차 서면, 2차 대면)

- 연구기관 평가결과(초안 및 수정안)를 연구기관에 전달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정확성 및 수용성을 제고

○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도출

- 연구기관의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3차 평가결과 검토회의를 통해 수용(평점조정, 평가의견서 수정 등) 여부를 결정
- 평가결과 검토회의 및 총괄반 회의를 거쳐 부여한 최종 평점을 바탕으로 평가단은 연구기관 평가결과(안)를 확정

○ 연구기관 평가결과 최종 평점 부여 시 감점사항

-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요소를 '0점' 처리함.

평가과정 중	평가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평가요소 '0점' 처리 -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 - 자료 작성자(책임자 포함) 징계 요구 - 허위자료 제출 공개(연구회 홈페이지 공시, 경영협의회 발표 등) -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또는 향후 지급할 부분에서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혀진 시점 이후 실시되는 평가에서 해당 평가요소 '0점' 처리 -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 - 자료 작성자(책임자 포함) 징계 요구 - 허위자료 제출 공개(이사회, 경영협의회 발표 등) -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관련부서에 통보 및 반영 - 허위자료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경상비 인센티브 회수 등)

- 오류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평가요소에 대해 감점 처리
-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작성 분량을 초과한 경우, 전체 분량을 기준으로 매 1페이지 초과 시마다 1점씩 감점
- 연구기관 평가 수행 중 국회 및 정부부처의 각종 감사 지적사항, 이사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지표 및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에 반영(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지표에 반영, 필요시 평가단 총괄반의 결정,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연구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에는 사전 예방노력과 사건 발생 후 신속·적절한 관리 대응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기관 평가결과(종합평점)에 반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받지 않는 부설기관 등 외부 평가 미실시 기관의 경우, 해당 배점을 제외한 평가요소의 나머지 점수를 전체 평가요소 배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평가결과(보고서) 기술 시 평가지표(요소)별 평가등급을 부여
 - 평가지표(요소)별 평가등급 부여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부여

백분율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95% 미만	A
85% 이상 90% 미만	B
80%이상 85% 미만	C
80% 미만	D

※ 평가지표(요소)별 평가등급은 배점 대비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

※ 평가점수 등 평가에 필요한 수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종합등급 부여

-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평가등급은 지나친 줄 세우기식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협업 및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등급 절대평가 방식을 활용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 연구기관 평가등급은 1,000점 만점으로 집계된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

6) 평가결과의 확정·제출

- 연구기관 평가단에서 확정된 ‘연구기관 평가결과(안)’은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연구기관 평가 담당 분과)와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확정
- 이사회에서 승인·확정된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7)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간의 자원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합산 점수인 종합평점을 활용
 - ※ 평가결과에 따라 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정부출연금 차등 반영,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및 연임·해임 건의, 우수연구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
- 연구기관 평가결과 활용 시 평가등급 산정방식(원칙)에 종합 순위 산정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
- 연구기관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 ※ 기관장 경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구기관의 경우 평가등급 및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이 인정될 경우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연구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 **평가단의 평가등급 조정(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및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연구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 **평가단의 평가등급 조정(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및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평가등급 조정(안)은 평가단 총괄반 논의를 통해 평가결과(안)과 함께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2회 이상 연속하여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가능

※ 취임 첫째 연구기관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

- 미흡기관 자체 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환류조치
- 평가가 실질적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부여하도록 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를 통해 Best Practice 확산
 -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개선 효과 제고
-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 설명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 실시
- 연구기관 평가단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차년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활용

8 평가 추진일정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 경영목표 실천계획 제출부터 시작하여, 연구기관 평가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 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단의 사전평가 및 실사평가, 평가결과(안)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 제시,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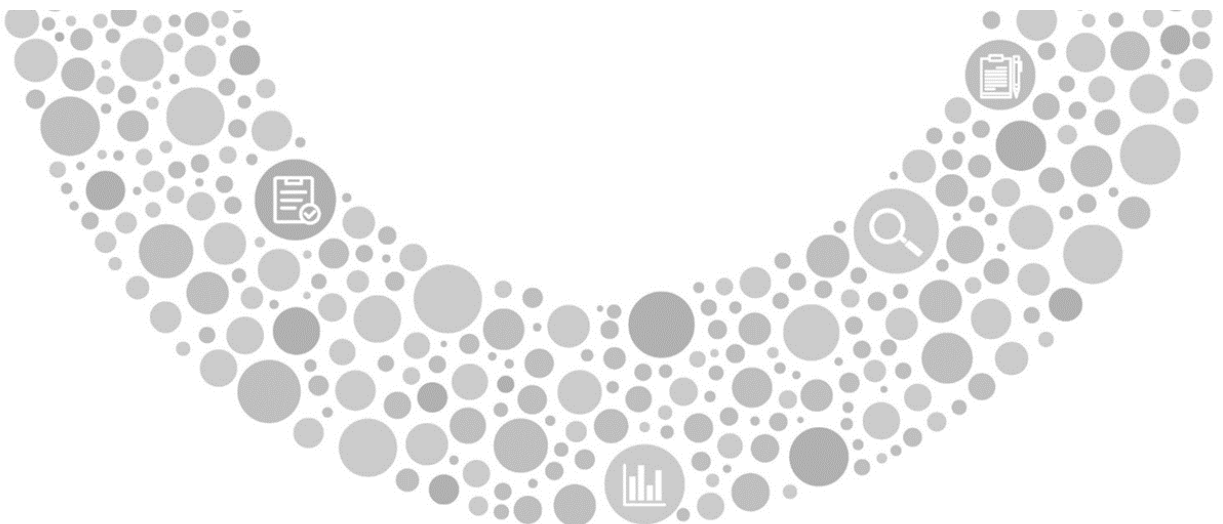
업 무 내 용	일 정
• 2023년도 연구기관 경영목표 실천계획 제출	2023. 8.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추진 기본계획 수립	2023. 11.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단 구성	2023. 11. ~ 12.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단 제1차 전체회의	2023. 12.
•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위원에게 배포	2024. 1.
• 평가단 사전평가 및 실사평가 실시	2024. 1. ~ 2.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작성	2024. 3.
• 평가결과(안)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 제시	2024. 3.
• 평가단이 확정된 평가결과(안) 연구회에 제출	2024. 3.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검토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2024. 4.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안) 이사회 심의·의결	2024. 4.
• 평가결과 제출(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2024. 4. 30.까지.



제3장

연구기관 평가지표

1. 연구 분야(배점 800점)
 2. 경영 분야(배점 200점)
- ※ 가점(5점)



제3장

연구기관 평가지표 <<<

-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 분야(800점) + 경영 분야(2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을 집계함. (※ 가점 별도)

1 연구 분야(배점 80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1-1. 연구 분야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추진사업 3~5개, 중점추진사업별 실천과제 1~3개,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1~3개 설정 - (중점추진사업) 총점 800점 기준으로 각 중점추진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연구기관 자율 배점 부여, 단, 각 중점추진사업은 150~300점 범위에서 50점 단위로 배점 부여 - (실천과제) 각 중점추진사업 배점 내 자율배점 	800															
	○ 각 실천과제별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기준에 따른 배점 설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구분</th> <th>평가지표</th> <th>배점(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정성</td> <td>1-1-1. 목표의 타당성</td> <td>30%</td> </tr> <tr> <td>정성</td> <td>1-1-2. 이행 노력</td> <td>10%~20%</td> </tr> <tr> <td>정량+정성</td> <td>1-1-3. 목표 달성도</td> <td>10%~20%</td> </tr> <tr> <td>정성</td> <td>1-1-4.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td> <td>40% 이상</td> </tr> </tbody> </table>		평가구분	평가지표	배점(비중)	정성	1-1-1. 목표의 타당성	30%	정성	1-1-2. 이행 노력	10%~20%	정량+정성	1-1-3. 목표 달성도	10%~20%	정성	1-1-4.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	40% 이상
	평가구분		평가지표	배점(비중)													
	정성		1-1-1. 목표의 타당성	30%													
	정성		1-1-2. 이행 노력	10%~20%													
	정량+정성		1-1-3. 목표 달성도	10%~20%													
	정성		1-1-4.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	40% 이상													
	※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평가구분 : 정량, 배점 : 0~20점)																
	-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반영 (해외사무소별 10점)																
※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만 해당하며, 배점은 환산하여 적용																	

2 경영 분야(배점 20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55)	2-1-1. 효율적 조직운영 (15)	정성	① 연구 및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노력과 성과	10	15	
			②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	5		
	2-1-2. 인적자원 관리 (15)	정성	① 우수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8	15	
			② 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	4		
			③ 비정규직·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3		
	2-1-3. 내·외부 소통 (15)	정성	① 조직 내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4	15	
		정량	② 노사 간 협력체계 구축 실적과 성과	4		
			정량	③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2-1-4. 일·가정 양립 (10)		정량	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적정성	2	10
			정성	②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성과	8	
	2-2. 사회적 책임 (45)	2-2-1. 균등한 기회 제공 (10)	정성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2	10
정량			②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4		
			③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4		
2-2-2. 우선구매 실적 (5)		정량	①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1	5	
			②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실적	1		
			③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1		
			④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1		
			⑤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	1		
2-2-3. 윤리경영 (30)		정성	①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및 성과	15	30	
			②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8		
	③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		5			
	④ 채용비위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2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2-3. 예산운용 및 결산 (30)	2-3-1. 예산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 (30)	정량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12	30
			② 결산인여금 처분의 적정성	3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	15	
2-4.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45)	2-4-1. 보안관리 적정성 (15)	정량	① 일반보안	5	15
			② 정보보안 관리수준	5	
			③ 개인정보보호	5	
	2-4-2. 연구윤리 준수 (30)	정성	①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10	30
정량			②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20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25)	2-5-1. 대내외 지적 개선 노력 (12)	정성	① 대내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실적	12	12
	2-5-2. 경영 투명성 (13)	정량	①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3	13
②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5		
③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5		

※ 가점(5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구분	평가요소	점수	
가점	혁신계획 등 이행 노력	정성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4	5
			② 출연(연) 특성 등을 고려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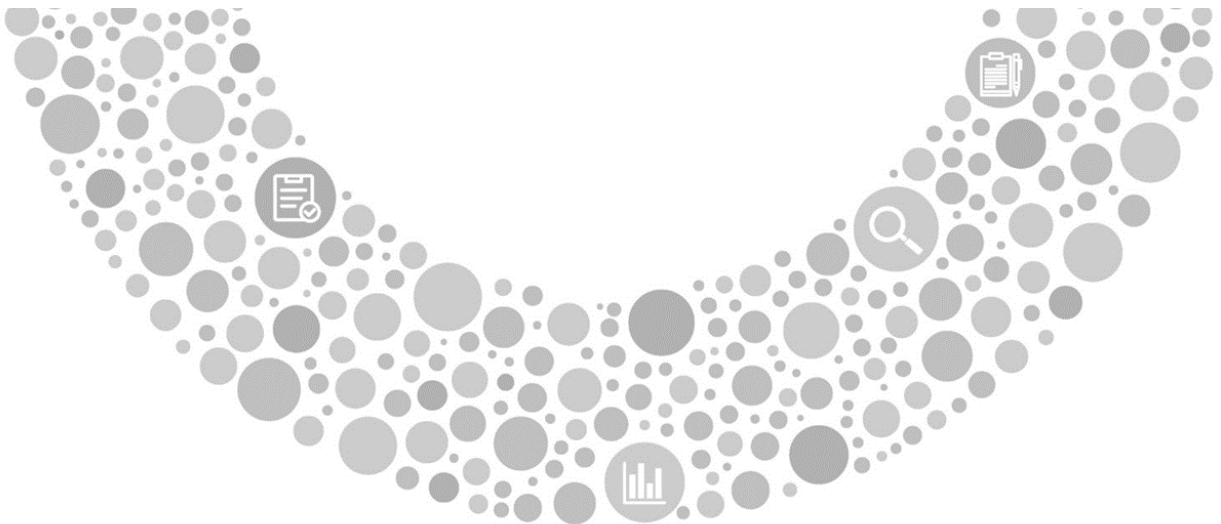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제4장

세부 평가기준

1. 연구분야
2. 경영분야



1 연구분야

1-1 연구분야

□ 중점추진사업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경영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전략’ 중 ‘중점추진사업’을 3~5개 선정하여 평가

🔍 작성양식

※ 각 중점추진사업별로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되,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중점추진사업별 성과목표 현황’ 표를 「실적보고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

경영 목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목표 종류	비고
						정량화	

I. 경영목표명

1. 중점추진사업명

① 실천과제명	① 성과목표명				'23년 목표치	정성	
	② 성과목표명				'23년 목표치	정량	
② 실천과제명	① 성과목표명				'23년 목표치	정량	

경영 목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목표 종류	비고
						정량화	

2. 중점추진사업명

① 실천과제명	① 성과목표명				'23년 목표치	정량	
② 실천과제명	① 성과목표명				'23년 목표치	정량	
③ 실천과제명	① 성과목표명				'23년 목표치	정성	

※ '중점추진사업' 별로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제출한 '추진전략'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연구기관이 2023년도에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와 일반연구과제를 과제 수 기준으로 80% 이상 포함하고, 중점추진사업에 50% 이상을 포함 (과제 수 산정 시, 수시과제 제외)

■ 실천과제

-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한 '추진전략'에 속하는 '실천과제' 중 1~3개를 선정하여 평가
- '실천과제' 단위로 임무유형을 설정하고, 임무유형을 고려한 평가지표별 배점을 설정하여 평가(※ 연구(지원) 분야 '실천과제'에 한하여 임무유형 설정)

작성양식

※ 각 실천과제별로 주요내용 요약을 기술하고, 각 실천과제의 평가지표 배점 산출 내역 및 '평가지표 배점표', '관련사업 내역' 표를 포함

○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지표	배점	배점 비중	비고
합계	000	100%	
목표의 타당성	00	30%	
이행 노력	00	%	
목표 달성도	00	%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	00	%	

※ 평가항목별 배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배분하고, 필요 시 배점 비중 합계가 100%가 되도록 단수 조정

○ 관련사업 내역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 책임자	예산 (천원)	시작일	종료일	비고
1							
2							
3							
4							
5							
6							
7							
8							
9							추가
10							추가

* 기본·일반·수시·수탁 등 사업 구분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기 제출한 관련사업 내역에서 2023년도 연중 추가된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비고에 “추가”를 기재 (다음에 한정하여 추가 : ① 2023년도에 수행한 수시, 수탁과제, ② 2023년도에 달성된 주요 성과와 관련한 2023년도 및 이전연도 과제)

■ 실천과제별 평가지표

1-1-1. 목표의 타당성

🔍 평가기준

-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수립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 개별사업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평가
- ('23년도 평가) 계획의 적정성, 목표 수립의 정합성 및 도전성을 포괄적으로 평가

-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고려한 추진전략-실천과제-성과목표-성과지표 간 적정성
- 성과목표와 개별사업 간 적합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혁신적 및 도전적 성격

🔍 작성양식

※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술

1-1-2. 이행 노력

🔍 평가기준

- 실천과제와 성과목표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지표 이행의 적극성·혁신성 평가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 충실성
-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 대응성
- 성과지표 이행의 적극성·혁신성

-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연구과제 발굴·선정,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 연구성과 확산, 공공데이터 관리 등 연구과정 관리 전반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작성양식

-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술하되, '국가정책연구포털시스템(NKIS) 등록 실적' 표를 필수적으로 포함

1-1-3. 목표 달성도

🔍 평가기준

-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연구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

🔍 작성양식

-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술하되,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실천과제 성과목표' 표를 「실적보고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

1-1-4.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

🔍 평가기준

- 연구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정책적, 학술적 효과와 정책 기여도 평가

- 사업효과(국정과제 기여도, 단기·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의사결정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결과의 양적실적 및 질적수준 등)
- 정책기여도
 - 연구사업 정책기여도(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실적, 부처 등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등)
 - 정책 집행사업 정책기여도(사업집행의 효과성,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등)

연구보고서 평가

- (평가대상) '중점추진사업' 각 '실천과제'의 '관련 사업 내역' 중 기본연구사업(수시연구 포함), 일반사업,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수탁용역과제
 ※ (평가제외) 사업·조사성 과제, 대외비 과제, 수탁용역 과제 등
- (평가방법) 평가대상 과제 전체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보고서 내용, 정책 및 학술 기여 성과 등 평가
- (준수사항)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연구기관이 평가대상연도에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와 일반연구과제 수를 합한 과제수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중점추진사업에 과제수의 50% 이상을 포함
 ※ 필요 시, 평가단이 중점추진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평가할 수 있음

작성양식

-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술
- ※ 「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효과 및 정책기여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목록을 별도 첨부

해외사무소 평가결과

평가기준

- '2023년도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후, 연구분야 총점(800)에서 해외사무소 배점(10~20)을 제외한 점수(780~790)로 환산하고, 해외사무소 평가결과를 합산
 ※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연구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구분	해외사무소	비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경제연구소(미국 워싱턴)	
	북경사무소(중국 북경)	
	델리사무소(인도 델리)*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중국 북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중국 북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중국 상해)	

* '23.6. 인도 정부 해외사무소 승인, 성과 도출을 위한 운영기간 등 고려하여 '24년도 이후 평가 예정

2 경영분야

- 경영분야의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며 정성평가는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을 고려하여 평가 척도에 따른 5단계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실적보고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기술하되 작성양식에 제시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개선실적과 요약자료를 포함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평가·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1-1. 효율적 조직운영(15점)

평가기준

- ① 연구 및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노력과 성과(정성, 10점)
 - 기관의 연구 및 경영환경에 따른 효율적 조직 구성·운영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 ②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정성, 5점)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및 아래의 내용을 포함

[2-1-1-①]

연구 및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노력과 성과

연구 및 경영환경 ¹⁾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	타당성 및 효과

1) 연구 및 경영환경을 도출하게 된 근거 및 사유를 함께 기술

※ 공식·비공식적 조직 및 임시적인 TF 운영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2-1-2. 인적자원 관리(15점)

평가기준

- ① 우수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정성, 8점)
 - 연구직, 비연구직 등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및 인력운영 체계, 그 밖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 직종, 직무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기관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
- ② 업적평가시스템 개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정성, 4점)
 - 연구직/비연구직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 지표(요소) 설정 및 계량화 비율 정도, 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노력 및 실적, 연구직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및 협동연구 수행 등 업적평가 반영 여부, 업적평가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환류 및 이의신청)과 평가결과 활용(인사, 교육, 인센티브 등)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
- ③ 비정규직·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정성, 3점)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등 비정규직 운영의 적정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적합 직무의 개발, 업무조정, 퇴직 후 활동을 위한 지원, 전문성 활용 등 제도설계의 적정성 및 실적 평가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포함

2-1-3. 내·외부 소통(15점)

평가기준

- ① 조직 내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정성, 4점)
- 조직 구성원과의 경영전략 및 목표 공유 정도, 조직 내 구성원(기관장 포함)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한가를 평가
※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에 활용
- ② 노사 간 협력체계 구축 실적과 성과(정성, 4점)
- 노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 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등 기관운영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
- ③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정량, 7점)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고, 평가등급은 아래 5등급(백분율 기준)으로 환산·적용

90점 이상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5점 미만
S	A	B	C	D

* 고객만족도 조사모델(KCSI-EHS)을 활용하여 정부기관과 산·학·연 고객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행, 정보제공, 교육훈련 육성 및 촉진 등 상사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출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포함

2-1-4. 일·가정 양립(10점)

평가기준

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적정성(정량, 2점)

- 법령에서 정하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규정화 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체크리스트 양식 참조)

평가기준 준수(2점)	• 법령에서 정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두 도입·운영하는 경우
평가기준 미준수(0점)	• 법령에서 정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일부 도입·운영하지 않는 경우

②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성과(정성, 8점)

- 공무원 제도를 준용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가족 친화인증 여부 등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및 제도 운영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및 아래의 내용을 포함

[2-1-4-②]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적정성(체크리스트)

법령 등	규정 및 제도 운영여부	근거자료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근로시간 40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부에 대한 야간, 휴일 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근로자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휴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 등)		

법령 등	규정 및 제도 운영여부	근거자료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3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유사·산 시 주수에 따른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및 급여 삭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정기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 및 급여 삭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및 1회 분할사용 허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 휴가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1년 이내 허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휴가 허용)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연간 90일의 무급휴직 허용)		

법령 등	규정 및 제도 운영여부	근거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❶ 가족을 돌보는 경우 ❷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❸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❹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1년 이내로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 '규정 및 제도 운영여부'에 O,X로 체크하고, 근거규정 등을 '근거자료'에 작성

※ 체크리스트 항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법령 등에서 정한 조건보다 기관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예 : 무급휴가 → 유급휴가, 육아휴직 1년 → 3년 등)는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2-1-4-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성과

가족친화인증 여부	인증구분	인증 유효기간
O / X	최초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0000.00.00. ~ 0000.00.00.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평가대상연도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포함)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인증서, 가족친화인증 피드백보고서)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별도 제출

2-2 사회적 책임

2-2-1. 균등한 기회 제공(10점)

평가기준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정성, 2점)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여성인력 활용, 보직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 교육 실시, 기타 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적 등 연구 기관의 다양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②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정량, 4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를 평가

평가기준 준수(4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3.6% 이상
평가기준 미준수(0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기준은 관련 법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정량, 4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고용여부를 평가

평가기준 준수(4점)	• 연평균 전체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 6% 이상
평가기준 미준수(0점)	• 연평균 전체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 6% 미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산정기준은 관련 법률 및 국가보훈처 업체 등 실태조사 작성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및 아래의 내용을 포함

[2-2-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교그룹 평균 (A)	기준 (A*70%)	기관 비율	평가 결과	비교그룹 평균 (B)	기준 (B*70%)	기관 비율	평가 결과
46.08	32.26	44.25	적정	24.63	17.24	21.74	적정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서 각 기관에 통보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보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각 기관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분석결과)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별도 제출하며,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2-2-1-㉢]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단위 : 명)

월별	상시 근로자 수(A)	의무고용 필요 인원 (B=A×3.6%)	장애인 근로자수 (C)	오차 인원 (C-B)	장애인 고용률 (C/A)	준수여부 (3.6%)
평균	132.5	4.7	5	0.3	3.8%	준수
1월	100	3.6	5	1.4	5%	준수
2월	100	3.6	3	-0.6	3%	미준수
3월	130	4.6	5	0.4	3.8%	준수
4월	200	7.2	5	-2.2	2.5%	미준수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시 근로자 수(A) : 1월~12월 상시근로자 수(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 직원 포함(무기계약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인턴 등),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인턴포함)) 인원을 의미함.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하고 산정
 ※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만 기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와 일치하게 작성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증빙자료 별도 제출

[2-2-1-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단위 : 명)

연평균 고용인원(A)	의무고용 필요 인원 (B=A×6%)	국가유공자 고용인원(C)	오차(D=C-B)	국가유공자 고용률 (C/A)	준수여부 (6%)
100	6.0	5	-1	5.0%	미준수

※ 연평균 고용인원 :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1년 이상의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직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단, 기관의 대표,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제외

※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만 기재

※ 보훈처 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서 제출 기준으로 작성

※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 등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증빙자료 별도 제출

2-2-2. 우선구매 실적(5점)

평가기준

※ 외부 구입 총액은 공공구매종합정보(중소벤처기업부, SMPP)의 구매실적 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매실적은 기관에서 직접 산정

①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정량, 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제품,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및 공사)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 준수(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1%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 미준수(0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1% 미만인 경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②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실적(정량, 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 실적(제품,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 제외))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 준수(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 실적이 1%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 미준수(0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 실적이 1% 미만인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정량, 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제품, 노무용역 등 서비스, 공사)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 준수(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 미준수(0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④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정량, 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제품, 노무용역 등 서비스, 공사)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 준수(1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실적 5%, 공사 구매총액 3%를 모두 달성한 경우
평가기준 미준수(0점)	• 외부 구입 총액 대비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실적 5%, 공사 구매총액 3%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별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⑤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정량, 1점)

-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총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제품, 노무용역 등 서비스, 공사)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구매하려는 품목이 녹색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이를 의무 구매해야 하며, 해당 품목으로 구매가능한 물품의 총액을 의미함.

평가기준 준수(1점)	•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총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 미준수(0점)	•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총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의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서비스), 공사 등에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작성양식

[2-2-2-㉠]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외부 구입 총액(A)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B)	비율(B/A)	준수여부 (1%)

[2-2-2-㉡]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외부 구입 총액(A)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실적(B)	비율(B/A)	준수여부 (1%)

[2-2-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외부 구입 총액(A)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B)	비율(B/A)	준수여부 (50%)

[2-2-2-㉔]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외부 구입 총액(A)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B)	비율(B/A)	준수여부 (5%, 3%)
물품/용역(5%)				
공사(3%)				

[2-2-2-㉕]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의 총액(A)	녹색제품 구매실적(B)	비율(B/A)	준수여부 (60%)

2-2-3. 윤리경영(30점)

🔍 평가기준

①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및 성과(정성, 15점)

-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기획재정부, ’21.12.)’을 준용하여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현행화 여부, 제도화 노력 및 실적 등
 - 임직원의 윤리의식 확립,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 윤리경영 위험파악 및 관리,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정성, 8점)

- 감사(監事)의 활동 독립성 보장 및 지원(조직·예산·제도 등), 자체감사기구 인력 및 경력,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감사활동정보 공유(감사협의회 등) 및 감사기법 향상 노력, 감사교육훈련 실적,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감사(監事)는 연구기관의 ‘비상임 감사’를 말하며,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감사(監事) 소속하에 둔 감사부서를 의미

③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정성, 5점)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국가인권위원회, ’22.5.)’을 준용하여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제도 구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교육*체계 구축,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의 마련, 인권경영 과정 공개 등 인권경영추진 체계의 적정성과 실적
 - * 4대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타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 교육은 제외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적정성,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기관 내 인권이슈의 도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노력 및 성과

④ 채용비위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실적(정성, 2점)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른 채용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수립·운영 노력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용계획,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등 단계별 절차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포함

2-3 예산운용 및 결산

2-3-1. 예산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30점)

평가기준

- 연구회 결산 심사 결과를 활용(실적보고서 미제출)하여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12점),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3점),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15점)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 결산 심사 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총괄반 회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①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정량, 12점)

- 연구회 결산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2등급 척도로 평가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은 ①'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②'결원인건비 준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는 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용하여 평가
- ☞ '결원인건비 준수 여부'는 결원인건비 산정의 적정성 및 인건비 잔액의 차년도 이월 여부에 대하여 평가

- 평가척도

구분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점수	12	0

※ 평가기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결원인건비 준수 여부

※ 평가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 준수, 하나의 세부 평가요소라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미준수로 평가

②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정량, 3점)

- 연구회 결산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2등급 척도로 평가
-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의 적정 편성 및 집행 여부를 평가

-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은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결산잉여금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 ☞ 퇴직급여충당금과 능률성과급 등의 적정 편성 및 집행 여부와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평가척도

구분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평가기준 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점수	3	0

- ※ 평가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급의 적정 편성 및 집행 여부
- ※ 평가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 준수, 하나의 세부 평가요소라도 미준수하였을 경우 미준수로 평가

③ 예산 집행의 적정성(정량, 15점)

- 연구회 결산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6등급 척도로 평가
-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다음 5가지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 ① 예산과목 및 비목별 집행 기준 준수 여부
 - ② 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③ 사업비 내 경상 경비성 비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 ④ 전체사업비에 있어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의 적정성 및 수시연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⑤ 사업별 예산 집행률 및 부진사유의 타당성

- ☞ 평가연도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함.
- ☞ 부진사유의 타당성 등 정성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평가단 총괄반 회의에서 결정

- 평가척도

구분	예산 집행의 적정성					
	평가기준 모두 준수	평가기준 일부준수				평가기준 미준수
		평가기준 4개준수	평가기준 3개준수	평가기준 2개준수	평가기준 1개준수	
가중치	1.0	0.8	0.6	0.4	0.2	0.0

2-4 >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2-4-1. 보안관리 적정성(15점)

① 일반보안(정량, 5점)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국가보안(일반) 평가’ 결과를 평가점수(5점 만점)로 환산하여 활용하고, 평가등급은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환산·적용

② 정보보안 관리수준(정량, 5점)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연구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점수(5점 만점)로 환산하여 활용하고, 평가등급은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환산·적용

③ 개인정보보호(정량, 5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평가점수(5점 만점)로 환산하여 활용하고, 평가등급은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환산·적용

2-4-2. 연구윤리 준수(30점)

평가기준

①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정성, 10점)

-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저자표기 기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의 유무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 및 점검을 위한 제도 및 규정,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②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정량, 20점)

-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단'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평가 점수(20점 만점)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평가등급은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환산·적용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및 아래의 내용을 포함

[2-4-2-③]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운영 및 연구윤리 확보 노력

-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저자표기 기준 관련 규정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 및 점검을 위한 제도 등
- 부실학회 참여 예방을 위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노력 정도 및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성과 등

2-5 기관운영의 적정성

2-5-1. 대내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12점)

🔍 평가기준

- ① 대내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실적(정성, 12점)
 -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와 ‘자체감사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
 - ‘외부기관(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는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실적, 실적에 대한 성과와 환류를 평가
 - ‘자체감사 시행의 적정성’은 자체감사를 통한 개선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
 -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감사 시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 작성양식

※ 평가요소 별 자율로 기술하되,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 및 아래의 내용을 포함

[2-5-1-㉔]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가.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총계	건	개선 실적 및 현황	완료	건	
			추진 중	건	
			향후 반영	건	
			미반영	건	
구분	지적·권고사항 ¹⁾ (통보일 표시)	개선 실적 ²⁾	완료 여부 ³⁾	성과 ⁴⁾	비고 ⁵⁾ (시행시점 표시)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타					

- 1) 지적·권고사항 :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전체(‘근무’, ‘채용’ 관련 지적사항 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국정감사의 경우 실사평가 시까지 최종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2022년도) 지적·권고사항 및 개선 실적 등을 기술
 ※ 공통지적사항은 연구회에서 공지하는 공통지적사항 기준으로 전체 기관이 작성
 ※ 2021년도, 202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작성 (지적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여 구분)
- 2) 개선실적 :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규정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운영 및 집행 관련 사항,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 등을 구분하여 작성
- 3) 완료 여부 : 완료, 추진 중, 향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4) 성과 : 지적사항 개선 실적에 대한 성과를 기술하되, 양식(표) 외 별도(자율양식)로 작성 가능
- 5) 비고 : 시행(완료)시점, 미개선사항의 내용 및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재

나. 자체감사 시행의 적정성

(1) 자체감사 현황표

구분	실시 여부 ¹⁾	실시 기간	비고 ²⁾
2023년 자체감사(정기/특별)			

1) 실시 여부 : 자체감사 실시여부 기재(실시, 진행 중, 미실시 등)

2) 비고 : 자체감사 미실시의 경우 사유 기재(외부감사 시행 등)

(2) 개선 실적 및 성과

※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연구기관 자율 기술

2-5-2. 경영 투명성(13점)

평가기준

①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정량, 3점)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공공기관의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며,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를 다음 5등급(별점 기준)으로 환산·적용

0점	0점 초과 ~5점 이하	5점 초과 ~10점 이하	10점 초과 ~20점 이하	20점 초과
S	A	B	C	D

②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정량, 5점)

- 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고, 평가등급은 5등급(백분율 기준)으로 환산·적용

③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정량, 5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계획」(‘22.8.19.)에 의거하여, 연구기관 자체점검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결과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고, 평가등급은 5등급(백분율 기준)으로 환산·적용

가점 ▶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 평가기준

-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정성, 4점)
 -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른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단 총괄반에서 가점(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 ② 출연(연) 특성 등을 고려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과 성과(정성, 1점)
 -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경영분야 평가단에서 평가하여 총괄반에서 가점(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 작성양식

- ※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는 별도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② 출연(연) 특성 등을 고려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자율로 기술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TF 명단

〈 평가제도 개선 TF 〉

(구분별 가나다 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팀장		이재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윤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본부장
위원	국무조정실	김선종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장
	외부 전문가	곽선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
	연구 기관	김기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학실장
		김대규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장
		김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류재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사업팀장
		이승용	건축공간연구원 인사팀장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정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장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평가팀장
	연구회	이지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부장
간사	연구회	여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이진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8층(평가부)
전화 : 044-211-1130
F A X : 044-211-1499
발행일 : 2023년 6월
디자인·인쇄 : (주)삼일기획 044-866-3011
